

창업동아리 운영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들의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13.07.09. 개정)

제 2 조(정의) ① 창업동아리라 함은 재학기간 동안에 벤처기업화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도교수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기능성 연구활동 집단을 말한다.

② <2013.07.09. 삭제>

제 3 조(자격 취득) ① 창업동아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심사 받아야 한다.(2013.07.09. 개정)

1. 창업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
2. 창업동아리 활동계획서 1부
3. 창업동아리 회원 명단 1부
4. 기타

② 창업교육센터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성 등을 심사한 후 자격이 인정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동아리 자격을 부여한다. (2010.11.24., 2013.07.09. 개정)

③ 창업교육센터는 관련 교수 또는 위원회를 통하여 제2항의 자격을 심사한다. (2010.11.24. 개정)

제 4 조(주관부서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창업교육센터로 하며 창업교육센터는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.

(2010.11.24., 2013.07.09. 개정)

1. 창업동아리 신청 접수 및 선정
2. 각종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참가 지원
3. 각종 창업동아리 지정사업 안내 및 참가 지원
4. 대학생 벤처창업 로드쇼 안내 및 참가 지원
5. 창업동아리실 관리 업무
6. 창업동아리 집기 관리 및 영선 지원
7. 기타 창업동아리 발전에 관한 업무

제 5 조(자격제한)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창업동아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 (2013.07.09. 개정)

1.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경우
2. 사업이 학생들의 전공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사업이 강의 및 대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(2013.07.09. 삭제)
5. 창업교육센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(2010.11.24., 2013.07.09. 개정)
6. 기타 창업동아리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(2013.07.09. 개정)

제 6 조(지원) 본 대학교는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.
(2013.07.09. 개정)

1. 창업동아리 활동 전용공간
2. 창업동아리실에 비치되는 사무용 집기 비품
3.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험실습실 제공(정규 교육시간 종료후)
4. 각종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참가 지원
5. 기타 창업동아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 7 조(동아리실 사용) ① 창업동아리실 사용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를 창업교육센터로 제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 (2013.07.09. 개정)

- ②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대학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에 필요한 연장신청서, 사업실적 및 기타 평가자료를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창업교육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. (2010.11.24., 2013.07.09. 개정)
- ③ 창업동아리가 대학교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공간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학교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공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 8 조(시설물 관리) ① 창업동아리 참여 학생은 학교의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며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- ② 창업동아리는 필요한 경우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 보유 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대학교의 관련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.

제 9 조(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) ① 동아리실 내부에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단, 사전에 대학교의 승인을 얻은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설치, 변경할 수 있다.

- ② 공간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면, 창업자는 사용공간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.

제 10 조(손해배상의무)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(물)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창업동아리는 그 손해를 대학교에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물품의 반출입) ① 학생들은 인화물,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교내 공간으로 반입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
- ② 대학교는 반입된 물품에 대해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 조(활동조사) ① 창업동아리는 매월 동아리의 운영실태 및 사업계획서 이행상황 등을 활동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, 대학교에서 활동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시에는 관련 자료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(2010.11.24., 2013.07.09. 개정)

- ②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창업동아리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창업동아리는 그 정도에 따라 이행촉구, 시정요구, 경고 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(2013.07.09. 개정)

제 13 조(변경통보의무) 창업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창업교육 센터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2010.11.24., 2013.07.09. 개정)

1. 승인받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
2. 대표 또는 지도교수의 변경
3. 기타 주요한 창업동아리 운영 변경사항

제 14 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제정)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(학장, 부학장 → 총장, 부총장으로 명칭 변경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